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생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8. 4.

발 의 자 : 김생환, 김정환, 송명화,
유정희, 최정순, 김기덕,
이광성, 김광수, 이은주,
송아량, 장상기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집단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가의 옥내 노후배관 교체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노후 사용자 시설 교체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
(안 제20조제1항제7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8호(종전의 제7호) 중 “제6호”를 “제7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8호) 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(종전의 제9호) 중 “제8호”를 “제9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(종전의 제10호) 중 “제9호”를 “제10호”로 한다.

7. 노후사용가 시설 교체지원 사업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7. 제1호부터 <u>제6호</u> 관련 조사, 연구, 개발, 교육, 홍보 및 컨설팅,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·학·연 협력사업</p> <p>8. 제1호부터 <u>제7호</u> 사업을 위한 토지·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·설치·운영·대여 및 양도</p> <p>9. 제1호부터 <u>제8호</u>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</p> <p>10. 제1호부터 <u>제9호</u>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</p> <p>11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0조(사업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노후사용가 시설 교체지원 사업</u></p> <p>8. ----- <u>제7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9. ----- <u>제8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0. ----- <u>제9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11. ----- <u>제10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